

남북회담 용어집

2015

목 차

1. 회담 주요 용어	1
① 회담 vs 접촉	3
② 전체 회의 vs 대표(위원) 접촉	4
③ 공개 vs 비공개 회담	5
④ 합의서 vs 공동보도문	5
⑤ 공동위원회 vs 분과위원회	6
⑥ 사과 vs 유감	7
⑦ 남북연락사무소 vs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	8
⑧ 서한 vs 전화통지문 (전통문)	9
⑨ 남북직통전화 vs 군통신	9
2. 회담 진행 용어	11
① 회담전략반	13
② 모의회담	13
③ 회담 대표단	13
④ 회담 발언문 (기조·보충·대응발언문)	14
⑤ 연락관 접촉	15
⑥ 북한 대표단 영접	15
⑦ 환담	15
⑧ 청훈	16
⑨ 합의서 서명·발효	16
⑩ 회담 평가회의	17
⑪ 식사	18
⑫ 참관	18
⑬ 행낭	19
⑭ 회담내용 기록	19

목 차

3. 회담 참고 용어	21
① 7·4 남북공동성명	23
② 남북조절위원회	23
③ 남북기본합의서	24
④ 6·15 공동선언	25
⑤ 10·4 선언	26
⑥ 남북 장관급 회담	27
⑦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9
⑧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29
⑨ 4대 경협합의서	30
⑩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31
⑪ 북핵위기	32
⑫ 남북 핵협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35
⑬ 일괄타결 동시행동	36
⑭ 한미합동군사훈련	36
⑮ 서해 南 북방한계선 (NLL) vs 北 해상 군사분계선	38
⑯ 서해교전	39
⑰ 6·3 합의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연계)	40
⑱ 6·4 합의 (서해상 군사충돌 방지 및 상호 선전활동 중지)	40
⑲ 12·1 조치 (남북 간 출입·체류 제한)	41
⑳ 4·8 조치 (北 개성공단 가동 중단)	42
㉑ 8·25 합의 (DMZ 지뢰폭발 문제)	43
㉒ 적십자회담 의제 5개항	43
㉓ 특수이산가족	44
㉔ 변칙대좌	45
㉕ 민족공조	45

4. 회담 환담 시 참고	47
① 환담	49
② 환담의 주제별 내용	49
① 인사말 (안부)	49
② 날씨 (24 절기)	50
③ 명절	50
④ 농사	51
⑤ 지역 (회담 장소)	51
⑥ 체육	52
⑦ 식사 (음식)	52
⑧ 역사 (평화, 전쟁)	52
⑨ 남북관계	53
⑩ 명언 (사자성어, 고사성어 등)	53
5. 회담 시 주요 사용 용어 (남북 비교)	57

1

회담 주요 용어

1. 회담 주요 용어

① 회담 VS 접촉

- 남북대화는 크게 「회담」과 「접촉」으로 구분
 - 통상 회담은 포괄적 의제나 상위회담에서 파생된 의제를 다루는 협의를, 접촉은 구체적인 의제(실무·현안 등)를 다루는 협의를 의미
 - * 경우에 따라, 회담과 접촉은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 상호 간 의견을 조율
 - 그러나, 그동안 회담과 접촉은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
 - * 회담: △(수석대표) 정상회담·총리회담·고위급회담·장관급 회담·실무회담 △(분야) 경제회담·적십자회담·군사 회담·국회회담 등
 - * 접촉: 실무대표접촉·실무접촉·특사접촉 등

남북회담

(진행) 남북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을 제의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같은 방식으로 회담 의제, 날짜, 장소 등을 합의하고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 후 합의된 날짜와 장소에서 회담을 개최

* 회담의제의 경우 사전에 예비회담(접촉), 실무회담(접촉)을 개최하여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의제를 확정된 후 본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음.

(명칭) 회담의 명칭은 그 회담에 참가하는 수석대표의 직위나 직책·계급에 따라 정함.

* 보통 실·국장 이하의 회담은 실무회담(접촉)이라 지칭

(대표) 회담 대표 특히 수석대표의 급은 남북 간 대등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남북의 조직·제도가 상이하여 완전한 일치에는 한계

② 전체 회의 vs 대표(위원) 접촉

- 남북회담에서 쌍방의 기본입장과 합의사항은 전체 회의를 통해 발표되고, 상호 간 의견조율이나 타협 등의 실질적인 협의는 △수석대표(위원장) 접촉 △대표(위원)접촉을 통해 진행
- (전체회의) 남북 회담대표단이 모두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 첫 전체회의는 △회담 대표단 인사 △수석대표(위원장)의 대표단 소개 △환담 △수석대표(북측은 단장)의 기조발언 낭독 △기조발언에 대한 상호 간 개괄적인 논평·질문 順 진행
 - * 전체회의에는 회담대표 외 모든 수행원과 기록요원이 참석
 - 마무리 전체회의는 △(합의 시) 합의문의 서명·교환 및 회담결과 평가 △(미합의 시) 회담결과 평가 및 각자의 입장과 향후 방향 제시
 - * 회담이 며칠 간 계속될 경우에는 대체로 매일 첫 회의는 전체회의로 개최하여 전날에 진행된 전체회의나 수석대표(위원장) 접촉과 대표(위원)접촉의 내용을 정리·평가하고 각자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함. 마지막 날 개최되는 전체회의는 회담을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종결회의'라고도 함.
- (대표접촉) 회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담판 △심도 있는 협의 △문안조정 등을 위해 수석대표나 일부 회담대표만 참여하는 회의
 - 접촉수준에 따라 △수석대표(위원장)접촉 △대표(위원)접촉으로 구분
 - * 수석대표(위원장)접촉과 대표(위원)접촉에는 일부 대표·수행원·기록요원만 참석

③ 공개 vs 비공개 회담

- 회담의 △개최일자 △대표 △의제 △합의 내용 등을 사전 및 사후에 공개하여 진행
 - 대부분의 남북회담은 공개회담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 회담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1일차 전체회의 중 대표단 환담 및 대표단 소개, 마지막 종결회의 등 공개

(회담 진행 중) 공개 vs 비공개 회의접촉

(공개) 남북회담 시 협의과정이 영상, 음성 등을 통해 상호 중계됨으로써 회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어 즉각적인 지침 전달이 가능

* 주로 전체회의가 공개로 진행

(비공개) 남북 상호 간 의견 조정, 상대방의 진의 파악, 합의 문안 정리 등을 위해 수시접촉이 필요할 때 쌍방은 영상 또는 음성이 중계되지 않는 상태의 수석대표 또는 대표 접촉을 진행, 이때 기록을 위해 쌍방은 최소한의 수행원 또는 기록인원을 배석

④ 합의서 vs 공동보도문

- 남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합의서 △공동 보도문(발표문) 등의 형태로 확정
 - 합의서와 공동보도문(발표문)은 회담에서 남북의 의견이 접근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간 협의(문안조정 등)를 걸쳐 작성
- (합의서) 남북이 상호 간 합의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로 쌍방 수석대표의 이름·서명 표기

- 체결된 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공포하나, 재정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큰 경우 국회 동의도 필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1~3항)
- 既 체결·비준된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합의서는 회담대표(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으로 발효 가능(「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
-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발생 △국가 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 상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일정기간 정지 가능(「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 (공동보도문) 남북 간 의견이 대체로 접근하였으나, 합의서 형식으로 명문화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을 공동보도문(발표문)의 형태로 정리하여 서로 확인한 후 언론에 발표
 - 공동보도문은 문서에 수석대표의 이름·서명 없이 회담 날짜와 장소만 표기
 - * 관례적으로 장관급 회담 등은 합의내용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

⑤ 공동위원회 vs 분과위원회

- (공동위원회)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구성된 총괄협의기구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92.2.19) ⇒ 남북핵 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정상회담」(‘07.10.4)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15.8.1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 (분과위원회)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설치된 하위협의기구
 - △「남북기본합의서」(92.2.19) 이행을 위한 분과위 (3개)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산하 분과위(8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산하 분과위(4개) 등

⑥ 사과 vs 유감

- (사과)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표현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전하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의사표시
 - 그러나, 통상 개인 간에 쓰이는 말로 국가나 정치 집단 간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남북 간에도 유례가 없음.
- (유감) 외교관계에서 △불만 △사과를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 * 사전적으로 유감(regret)은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 (遺憾) △느끼는 바가 있음(有感)을 뜻함.
 -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유감 표명은 사실상 사과를 의미
 - ※ 유감표명을 문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행위주체가 분명히 표기될 필요

북한의 유감표명 사례

- ① 北 청와대 기습(1968.1.21) : △김일성, 이후락 중정부장 방북 시 언급('72.5월) △김정일, 박근혜 의원 방북시 유감 표명('02.5월)
- ② 강릉 무장공비 침투(1996.9.18) : 北 외교부 대변인 성명('96.12.29)
* "외교부 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96.9월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
- ③ 제2차 연평해전(2002.7.30) : 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 전통문('02.7.30)
* "얼마전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④ 북한 DMZ 지뢰도발(2015.8.4) : 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15.8.25)
*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⑦ 남북연락사무소 vs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

- (남북연락사무소) 남북 당국 간 연락업무를 담당
 - 주요 기능은 △남북 간 연락업무 수행 △남북 합의사항 이행 관련 실무협의 △각종 왕래·접촉에 따른 안내와 편의 제공 등
 - * 「남북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자유의 집'에 설치, 남북직통 전화 2회선 개통(1992.5.18, 「남북기본합의서」 및 「제7차 고위급회담」 합의 근거)
-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 남북 적십자 간 연락업무를 담당
 - 주요 기능은 △남북적십자 간 연락업무 수행 △적십자회담 관련 실무 협의 등

*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자유의 집'에 설치, 남북 직통전화 2회선 개통(1971.9.22,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합의 근거)

연락관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는 제반 연락업무와 실무협의를 담당할 연락관을 각각 배치

남북의 연락관은 △자기측 서한·전통문 발송 △상대측 서한·전통문 수신 △각종 회담·행사 등에서 일정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사전에 협의

⑧ 서한 vs 전화통지문 (전통문)

- 남북 간 의사전달의 공식적인 수단은 서한과 전화통지문
 - 서한과 전통문에는 모두 수신인과 발신인의 직함과 이름 기재
 - * 민간차원에서는 대북 의사전달에 메일·팩스 등의 수단도 이용
- (서한) 편지 형식의 문서를 판문점의 연락관을 통해 직접 전달
 - 통상 서한에는 △대북제의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 등 서술
- (전통문) 남북 간 설치된 통신장비(전화 등)로 대북 의사 전달

⑨ 남북직통전화 vs 군통신

- 남북 간 통신수단은 △남북직통전화 △군통신 등 존재

- (남북직통전화) 판문점 경유 남북 간 직통 회선
(현재 33개)
 - 남북직통전화는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에 최초 설치('71.9.22, 2회선)
 - 현재 △남북연락사무소(자유의 집↔판문각) 5회선
△회담지원용(서울↔평양) 21회선 △항공관제용
(인천↔평양) 2회선 △해사 당국(서울↔평양) 2회선
△교류협력협의사무소용(서울↔개성) 3회선
 - * 개통 시간 : △평일 9시~16시 △토·일, 쌍방 공휴일 휴무 △
일방의 요청 시 연장 가능
- (군통신선) 동·서해지구 군통신 회선(현재 9개)
 - '02.9.24, 서해지구 군통신 개설, 현재 6회선(전화2,
팩스2, 예비2)
 - '02.12.5, 동해지구 군통신 개설, 현재 3회선(전화
1, 팩스1, 예비1)

2

회담 진행 용어

2. 회담 진행 용어

① 회담전략반

- 회담준비부터 평가까지 회담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단계별로 자료를 검토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T/F성격의 회의체
 - 회담의 기본입장, 전략, 대책, 발언문, 진행상황 및 결과 평가 등
 - * 회담전략반은 회담본부장, 통일비서관, 대북전략국장, 관계부처 실장급 등 구성

② 모의회담

- 남북회담에 대비하여 사전에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회담
 - 회담대표단과 전문가의 참여 아래 실제 회담의 절차와 방법대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응책을 마련
 - 회담 대책, 각종 발언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

③ 회담대표단

- 회담대표단은 △ 수석대표(위원장, 대표가 2인 이상의 경우 지정) △ 대표(위원) △ 수행원(회담대표 보좌) △ 지원인원(회담 관련 전략·행사 등 지원) △ 연락관 등으로 구성
 - * 회담대표단과 별도로 회담내용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단도 동행

- 회담대표의 임명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
 - (중요 사항) 통일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법 제 15조1항)
 - * 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법 제15조4항)
 - (일반 사항) 통일부 장관 또는 장관이 임명한 자 (법 제15조2~3항)

④ 회담 발언문 (기조·보충·대응발언문)

- 회담의 주요 발언문은 △기조발언문 △보충발언문 △대응발언문 등
- (기조발언문) 우리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 수석대표 낭독
 - △인사말 △회담의 의의와 의미 △의제 제시 및 설명 △우리측 의제의 정당성·합리성 설명 △북측 호응 촉구 △맺음말 등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
 - * 북측은 통상 기조발언문을 '첫 발언'으로 명기
- (보충발언문) 우리측 의제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북측의 이해와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
 - △통계 △과거 사례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다양하게 활용
- (대응발언문) 북측의 제기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北 주장의 비현실·비합리성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 ※ 회담 의제가 포괄적인 경우 회담 대표 간 보충발언과 대응 발언의 역할을 분담

⑤ **연락관 접촉**

- 연락관의 접촉 장소와 활동은 회담 개최 전·후에 따라 차이
- (회담 개최 前) 판문점에서 △서한 전달·접수 △전통문 전달·접수 △전화통화 등 수행
- (회담 中) 회담 현장에서 △사전답사를 통한 일정·시간·장소 등 점점 △회담대표단 안내 △문서(기조 발언문 등) 상호 교환 △회담 중 수시접촉을 통한 대북협의 등 지원

* 연락관이 2명 이상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락관을 임명하여 운영

⑥ **북한 대표단 영접**

- 북한 대표단의 영접은 회담 장소에 따라 상이
- (판문점 「평화의 집」) 우리측 대표단 전체가 대기실에 모여 북측 대표단을 영접하고, 각기 회담장으로 입장
- (판문점 외 우리 지역) 우리측 차석대표가 북측 대표단의 우리측 도착지점(공항 등)에 나가서 마중하고, 북측 대표단이 숙소에 도착하면 우리 측 수석대표가 영접

⑦ **환담**

- 회담대표단이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나누는 가벼운 담소
 - 날씨, 고사성어, 속담, 남북관계 등 소재에 제한 없이 진행

- 이 과정에서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회담의 의미와 추진방향 등을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전달
- 통상 환담은 언론 등의 취재편의 제공을 위해 공개
 - 언론은 환담 시 양측의 발언을 유추, 회담의 분위기와 성과를 전망

⑧ 청훈

- 회담 중 회담대표의 권한을 벗어나는 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서울 회담상황실)에 훈령(대처방안 등)을 요청하는 행위
 - 회담대표의 청훈 시 서울회담상황실은 「청훈 내용 장차관 보고 ⇒ 관련 부처 협의 후 훈령(안) 작성 ⇒ 장·차관(필요시 상급) 보고 후 훈령 확정 ⇒ 회담대표 전달」 순으로 처리

⑨ 합의서 서명·발효

- 합의서는 별도의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서명과 동시 발효
 - 경우에 따라 본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등 하위 회담에서 합의서를 가서명으로 작성한 후, 본 회담에서 남북 수석대표가 합의서에서 정식으로 서명·발효
- * 합의서 말미에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기

- 그러나, 국회 동의 등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큰 재정부담 등) 쌍방이 그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문본)를 교환한 후 발효

* 합의서 말미에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기

4대 경협합의서의 서명·발효

- (가서명) 제2차 경협실무접촉(00.11.11) ⇒ (정식 서명) 제4차 장관급 회담(00.12.16) ⇒ (확인) 제3차 경협제도실무접촉(03.7.31) ⇒ (문본 교환 및 발효) 발효통지문 교환(03.8.20)

<남측 발효통지문(“문본”) 전문>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김령성 귀하

나는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하고 채택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2003년 8월 20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정세현

⑩ 회담 평가회의

- 회담 종료 후 회담대표단과 회담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회의
- 회담대표단이 △회담 대책의 기본입장 및 방침에 따라 회담에 임하였는지 △우리 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복측 주장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협의

- * △(회담 지속 시) 1일 평가회의 △(최종 완료 시)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회담에는 회담대표, 수행원, 연락관, 일부 지원인원, 회담전략반원 등 참여

⑪ 식사

- 남북대표단의 식사는 △오·만찬(공연 등 포함) △공동 식사 등으로 구분
 - 오·만찬, 공동식사 등은 남북 간 합의(연락관 접촉)에 따라 진행
 - * 중요 회담에는 공식 오찬 또는 만찬 행사가 있으며, 주로 만찬 위주로 진행
- (오·만찬) 주최측의 공연·인사말·건배사 등이 포함되어 공식적인 성격이 강조된 식사
- (공동식사) 남북대표단이 급에 따라 적절히 동석하여 갖는 식사

⑫ 참관

- 남북의 합의에 따라, 회담기간 중 회담대표단이 △유명 유적지 △주요 시설물 △산업시설 등을 시찰
 - 우리 지역에서는 고궁이나 산업시설 중심으로, 북측 지역에서는 주로 유적지나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참관
- 북측은 종종 우리 대표단에게 △김일성 가계 우상 숭배 시설 △북한체제 선전물 등의 참관을 유도하는 바, 주의 요구

- 참관이 불가피한 경우, 북측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언행에 유의

⑬ 행낭

- 본국과 재외 공관이 '외교행낭(pouch)'을 통해 문서·물품을 서로 전달하듯이, 남북회담 시에도 행낭을 활용
- 북측지역에서 회담 개최 시 우리측은 행낭을 통해 회담진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물품 등을 수급
 - 행낭은 봉인된 상태로 보통 하루에 1~2회 정도 운송
 - (평양에서 회담 개최 시) 우리측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북측 요원에게 행낭을 인계하고, 다시 북측 요원은 우리측 평양상황실 요원에게 행낭을 전달
 - (금강산에서 회담 개최 시) 금강산상황실의 우리측 요원이 직접 속초로 나가 행낭을 인계·인수

⑭ 회담내용 기록

- 모든 회담은 배석자가 참여하여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
 - 일반적으로 남북회담은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회담 종료 후 녹취한 뒤 회의록으로 발간하여 보존
 - *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급적 발언내용을 그대로 정리

- 정상회담, 특사·비밀접촉 등 보안상 이유로 녹음이 어려운 경우에는 녹음 대신에 배석자가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보존

3

회담 참고 용어

3. 회담 참고 용어

① 7·4 남북공동성명

- 1972.7.4, 서울·평양에서 동시 발표된 성명(최초의 남북합의문)
 - * (南)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北) 김영주 당조직지도부장 및 박성철 제2부수상의 비밀교섭을 통해 합의
 - 남북 간 상호 실체를 인정하여 남북관계를 태동시켰으며,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방향과 내용 제시
 - 그러나, '73.8월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으로 후속조치 미이행

7·4 남북공동성명 주요 내용

- 전문과 7개항 구성
 - ① 조국통일 3대(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
 - ② 상호 중상·비방 및 무장도발 중단, 군사적 충돌방지 조치 시행
 - ③ 다방면 교류
 - ④ 남북적십자회담 조속 성사
 - ⑤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 ⑥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 ⑦ 합의사항 이행 약속

② 남북조절위원회

-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된 협의체

- '72~'73년간 남북조절위원회 전체회의는 서울·평양을 번갈아 3차례('72.11월, '73.3월, 6월) 개최되었으나, 북측이 일방적으로 중단('73.8월)
 - * '73.8.28., 北 김영주(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남북대화 중단 선언 발표
- '73.12월 이후락 공동위원장의 사임 이후 부위원장 회의로 변경되어 '73.12월~'75.3월 간 조절위원회 회의가 총 10회 개최되었으나, 北 도발(대통령 저격 등)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완전 중단
 - * '79.1월 우리측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북측은 “남북조절위원회는 그 존속의 의의를 상실했다”고 주장

③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약칭
 - (경과) △'91.12.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채택·서명(南 정원식 총리, 北 연형묵 총리) △'92.2.19.,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 발효
 - (평가) 남북 쌍방의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당국 간 합의문서로 남북관계의 성격 규정과 관계 발전을 위한 이정표 제시
 - * 특히, 합의서 전문에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현실로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민족의 과제임을 명시

남북기본합의서 주요 내용

- 3개장(남북화해·불가침·교류협력), 25개조 구성
 - 제1장 남북화해 △체제 인정 △상호 내정 불간섭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대방 파괴전복 행위 금지 △평화 시 까지 현 군사정전협정 체제 준수 등
 - 제2장 남북불가침 △무력 침략 금지 △남북의 경계선 및 구역에 대한 합의(군사정전협정이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 실현 및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협의·추진 등
 - 제3장 남북교류협력 △자원공동개발·물자교류·투자 등 경제교류·협력 추진 △과학·기술·문화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의 상봉 및 방문 △철도·도로 연결, 해로·항로 개설 △우편·전기통신 및 교류의 비밀 보장 등

④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

- 제1차 남북정상회담('00.6.13~15,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의 결과로 발표된 선언(6.15)
 - 남북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

6·15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 전문과 5개항 구성
 - 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함.
 - ②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함.
 - ③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함.

- ④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함.
-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함.

⑤ 10·4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제2차 남북정상회담」(07.10.2~4,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고 발표한 선언
 - 기존 경제·사회문화 교류 중심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합의

10·4 선언의 주요 내용

- 전문과 8개항 구성
 - ① 「6·15 공동선언」 고수 및 적극 구현
 - ② 남북관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 공고화
 - ③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협력
 - *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등 평화수역 조성 방안 협력
 - △남북국방장관 회담 재개 등
 - ④ 한반도 지역의 종전 선언 문제 추진(직접 관련 3자 또는 4자) 협력
 - * 「9·19 공동성명」, 「2·13 합의」 이행 공동 노력
 - ⑤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을 통한 경협사업의 활성화

-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해주 및 주변 해역)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해주지역의 경제특구 건설 및 해주항 활용 △안변·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북한 내 철도·도로 개보수와 공동이용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등
- ⑥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
 - * △백두산 관광 실시 △'08년 북경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이용 참가 등
- ⑦ 인도주의 협력 사업 적극 추진
 - *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한 상시 상봉 진행 등
-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의 권리·이익을 위해 협력

⑥ 남북 장관급 회담

-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6·15공동선언 제5항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에 따른 후속회담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총괄
 - (목적)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북핵 문제 △군사문제 등 남북관계 전반의 현안 문제 논의
 - * 또한 분야별 세부 이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하위 회담의 생성 △논의과제 부여 등이나, △하위 회담의 이견 △합의 사항 이행 과정의 문제 등을 협의·해결하는 기능도 수행
 - (경과) 2000.7월~2007.6월간 총 21차례의 장관급 회담 개최

3. 회담 참고 용어

장관급 회담	주요 내용
1차, '00.7.29~30, 서울	판문점 연락업무소 재개, 조총련 동포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 연결 등에 합의
2차, '00.8.29~9.1, 평양	군사당국자 간 회담,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 간 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에 합의
3차, '00.9.27~30, 제주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 설치 조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에 합의
4차, '00.12.12~16, 평양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시범 실시, 태권도 시범단 교환 등에 합의, 4대 경험 합의서 정식서명 등
5차, '01.9.15~18, 서울	남·북·러시아 사이에 철도와 가스관 연결 사업,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 개최 등 합의
6차, '01.11.9~14, 금강산	합의 없이 종료
7차, '02.8.12~14, 서울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이산가족 상봉행사,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측 참가 등 합의
8차, '02.10.19~22, 평양	북핵 문제 논의
9차, '03.1.21~24, 서울	북핵 문제 논의
10차, '03.4.25~29, 평양	북핵 문제 논의
11차, '03.7.9~12, 서울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합의
12차, '03.10.14~17, 평양	차기 회담 일정만 합의
13차, '04.2.3~6, 서울	군사 당국자회담 개최,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추진 등 합의
14차, '04.5.4~7, 평양	남북 장성급회담 개최 합의
15차, '05.6.21~24, 서울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 수산협력실무협의 회와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 합의
16차, '05.9.13~16, 평양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지원 합의
17차, '05.12.13~16, 제주	개성지역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에 협조한다는 합의
18차, '06.4.21~24, 평양	기존 합의사항 확인
19차, '06.7.11~13, 부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조치 중단, 6자 회담 복귀문제
20차, '07.2.27~3.2 평양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원칙적 합의
21차, '07.5.29~6.1 서울	실질적인 논의 없이 종료

⑦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북경협의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총괄협의체

- (경과)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00.9.30) 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차관급) 합의 △'00.12~'07.4월 간 총13회 개최(서울·평양·제주등) 등
- (산하 8개 실무협의회) △전력협력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해운협력 △임진강수해방지 △경협제도 △원산지확인

* 실무협의회는 남북경협의 수요 발생 시 장관급 회담 또는 경추위에서 합의하여 신설·운영하였던 만큼, 상위 회담에서 난항을 겪어 진전되지 않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실무협의회도 자동으로 미개최

⑧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남북경협의 심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격상시켜 구성한 남북경협 관련 총괄협의체

- (경과) △제2차 정상회담('07.10월) 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위원장 부총리급) 구성 합의 △제1차 총리회담('07.11월) 시 관련 경협공동위 구성·운영 관련 합의서 채택 △제1차 경협공동위 회의('07.12.~6, 서울) 개최 등
- (산하 8개 협력분과위원회) △남북도로 △남북철도 △남북조선 및 해운 △개성공단 △남북자원개발 △남북농수산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 △남북경제

남북회담 용어집

* 경추위 실무협의회와 달리, 경협공동위 협력분과위는 총리 회담 및 경협공동위를 통하여 일괄 구성하여 운영

⑨ 4대 경협합의서

- 남북경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청산결제 관련 합의에 대한 약칭
 - (경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00.8월) 시 4대 경협합의서 협의 합의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00.12월) 시 4대경협합의서 서명 △남북은 각각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동의 등을 거쳐 발효('03.8월)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호투자자의 투자자산 보호△송금·출입·체류 등 상대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투자활동 보장 △수용의 원칙적 금지 및 불가피한 수용 시 보상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방법 △조세정보의 교환 △조세 관련 분쟁의 해결 방법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기능·분쟁해결절차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규정

⑩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1차 북핵위기가 제네바 합의('94.1.21)를 통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처음으로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실시('94.11.9)
 - (내용)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의 상호 방문 허용 △1회 100만 달러 이하의 위탁가공용 시설재 반출 및 기술자 방북 허용 △500만 달러 이하의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
 - * 정부는 '93.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7월 기업인 방북을 제한하였으며, '94.2월에는 북핵문제 해결까지 남북 경협을 유보하는 조치 실시
 - 당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94.11.24) 등 세부 행정절차들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실질적 대북진출을 지원
- 두 번째 활성화 조치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발표('98.4.30)
 - (내용)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방북 전면 허용 △대북 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 △대북 투자제한업종의 '네거티브 리스트'화 △생산설비 대북반출 제한 폐지 등
 - 정부는 △「남북교역 반출입 고시」 개정('98.6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98.12월) 등을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지원

남북회담 용어집

⑪ 북핵위기

-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두 차례 위기 상황을 지칭
- (1차 북핵위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미신고 핵시설(영변, 2개소)에 대한 사찰을 거부('93.1월), NPT를 탈퇴('93.3.12)하여 발생
 -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였으나, 상호 접점을 찾는 데 실패
 - * 남한은 '93.10~'94.3월 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등을 통해, 미국은 '93.6월부터 미·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 하였으나 실질적 성과 미미
 - 북핵 대화의 공전 속에 전쟁위기까지 대두되었 으나,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의 방북('94.6.15)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
 - * 당시 카터는 김일성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및 핵 공격 위협 제거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남북정상회담 추진, 미·북 고위급회담의 재개 등을 합의
 - 이에 따라, '94.8월 미·북 고위급회담이 재개되고, 제네바에서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 '94.10.21)가 채택되어 북핵위기 해소
 - *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 △이에 따른 미국의 컨소시엄을 통한 대북 경수로 제공의 지원 및 핵활동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중유지원(난방 및 전력 생산용)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등

○ (2차 북핵위기) '02.10월 제임스 켈리 美 특사가 제기한 「고농축우라늄(HEU)개발계획」 의혹에 대해 북한이 시인하면서 시작

*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는 켈리와 면담('02.10.4) 시 “우리가 HEU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것인가. 우리는 HEU프로그램을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되어 있다”고 언급

- 이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02.12월)하자, 북한이 핵동결을 해제하고 NPT를 탈퇴('03.1.10)한 후 5MWe급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

- 미국과 북한이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의 형식(美 다자회담 vs 北 양자회담)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로 '03.4월 3자회담(미·북·중)이 개최되었으나 기존 입장만 재확인

- '03.8월 새로운 형태의 다자회담인 6자회담(남·북·미·중·러)이 출범하여 '05년 「9.19공동성명」, '07년 「2·13합의」, 「10·3합의」가 도출되었으나, 北 핵실험 ('06.10.9., '09.5.25., '13.2.12.) 등에 따라 실제 성과 미미



구분	주요 내용
9·19 공동성명 (2005.9.19) 북핵 해결의 실마리 마련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부재 및 대북 공격·침공 의사 부재 확인 - 북한은 평화로운 핵 이용 권리 보유, 여타 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에 동의 ○ 관계 정상화 - 미·북은 상호주권 존중, 평화공존, 관계 정상화 조치

3. 회담 참고 용어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북 관계 정상화 조치 ○ 대북 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 경제 협력 증진 -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 한국은 200만kW 전력 공급 제안 재확인 -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 직접 당사국들 간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협상 개최 -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이행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 단계별로 상호 조율
<p>2·13 합의 (2007.2.13)</p> <p>9·19 합의 초기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단계 이행 계획: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처리 시설 포함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 - 미·북 관계 정상화 양자 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 일·북 관계 정상화 대화 개시 - 중유 5만 톤 상당 에너지 지원 ○ 5개 실무그룹 구성: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 다음 단계 이행 계획: 초기 단계 완료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6차 장관급회담 개최: 초기 단계 완료 이후 ○ 한반도 평화 체제: 직접 관련 당사국간의 별도 포럼에서 협상
<p>10·3 합의 (2007.10.3)</p> <p>9·19 합의 2단계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 ○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 노력 ○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

⑫ 남북 핵협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91년 남측은 남북대화의 진행과정에서 국제사회의 北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남북대화의 틀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시도
 -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91.11.8), 「남한 내 핵부재 선언」(12.18)을 연달아 발표
 - * 이에 앞서, 미국이 해외에 배치한 모든 전술핵무기의 철수 선언(‘91.9.27)
 - 이를 배경으로 남북은 핵협상(‘91.12.26·28·31, 판문점)을 진행하여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문안에 합의하고, 정식 서명(‘92.1.20)
 - * 이외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훈련 중지와 북측의 북한-IAEA안전조치협정 체결 문제도 맞교환 형식으로 타결(‘92.1.7)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주요 내용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함.
-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함.
-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함.
-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함.
- 남과 북은 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고위급회담('92.2.19)에서 「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되었고,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3.19)되어 '93.1월까지 운영(총 13회 회의)
- 남북 핵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신고 핵시설(2개)에 대한 IAEA의 추가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NPT를 탈퇴함으로써 1차 북핵위기가 발생

⑬ 일괄타결 동시행동

- 협상에서 요구사항 전체를 하나로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쌍방이 동시에 실천하는 방식
 - * 이와 달리, 「건별합의 순차집행」은 협상의 요구사항 중 상호 간 합의가 쉽고 의견이 접근하는 사안을 우선 합의하여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방식
 - 2차 북핵위기 당시 북측은 △美 대북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 △北 핵포기가 「일괄타결 동시행동」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견지
 - 이는 北 핵폐기는 핵문제 해결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라는 입장으로 미국의 「先 핵폐기」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 ※ 핵폐기를 유보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는 北 회담전략

⑭ 한미합동군사훈련

- 한·미는 닉슨독트린('69.7.25) 이후 주한미군의 감축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수시 실시하였으며, 이는 '76년부터 팀 스피리트 (Team Spirit) 훈련으로 명명되어 '93년까지 연례 실시

* 팀 스피리트 훈련 : 한·미 육·해·공 병력 20만명 참여, 매년 2~4월 개최

- '92년에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북한의 핵사찰 미수용에 대한 상응 조치로 '93년에 재개
- 그러나, '94년 1차 북핵위기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잠정 중단
- 북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북침 공격훈련이라고 비난하면서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구실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긴장상태를 조성
 - 우리측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군사적 돌발사태에 대비한 방어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라고 대응
- * '82년부터 북한의 훈련 참관도 요청하였으나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
- '94년 이후 팀 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의 반발을 감안하여 훈련의 규모·기간 등을 조정하고 훈련의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 △'94~'07년 간 한미전시증원연습(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 △'08년 이후 키 리졸브(Key Resolve)로 대체

⑮ 서해 南 북방한계선 (NLL) vs 北 해상 군사분계선

-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은 '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사령관이 설정한 해상 경계선
 - 정전협정에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남측 서해 5개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측 황해도 지역의 중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선
 - *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를 따라 설정
 - 북측은 서해 NLL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73년부터 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분쟁(함정 운행, 전투기 비행, 어선 격침 등)을 야기하고, '77년에는 경제수역(200해리)을 선포(7.1)한 서해수역을 군사 경계수역으로 지정(8.1)
 - ※ 북한은 △「기본합의서」 체결('92년) △「조선중앙연감」('59) NLL 경계선 표시 △대남 수재물자 지원('84년) 시 인도선 지정 등에서 사실상 NLL 인정
-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상의 경계선
 - 서해 NLL을 부정하며 수시로 NLL을 침범하던 북한은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소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99.9.2, 북한군 총참모부)
 - * 이 분계선은 NLL 남쪽 연평도 인근 3~4마일, 먼 곳은 15마일 수준 남하

- 후속 조치로 「서해 5개섬 통항질서」(’00.3.23, 해군 사령부)를 발표하여 NLL의 무실화를 시도
- * 「서해 5개섬 통항질서」는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개 도서로 운항할 수 있다는 내용

⑩ 서해교전

- 북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선제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 해군 사이의 3차례 교전
- (제1차 연평해전, '99.6.15)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北 경비정이 우리 해군에게 선제공격을 가하여 발생한 남북 함정 간 포격전으로 6·25전쟁 이후 남북 정규군 사이에 벌어진 첫 해상전투
- * 이 전투에서 우리 해군은 9명 부상, 북측은 함정 1척 침몰 등 다수 부상
- (제2차 연평해전, '02.6.29)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다시 발생한 남북 해군 사이의 전투로, 북한이 1차 연평해전의 패배에 대한 설욕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실시한 공격으로 판단
- * 이 전투에서 우리 해군은 6명 전사, 18명 부상, 북측은 30여 명의 사상자 발생
- 이후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에서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변경
- (대청해전, '09.11.10)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무단 침범한 북측이 우리 해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개시해 발생한 교전
- * 이 전투에서 우리 해군의 인명피해 전무, 북측은 경비정 1척 손상 및 다수의 사상자 발생 추정

남북회담 용어집
 2015년 11월 10일 발간

⑰ 6·3 합의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연계)

-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한 남북 간 합의
 - '99년 남북은 차관급 수석대표 비공개 접촉 (5.12~14, 5.23~25, 6.3, 베이징)에서 대북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의 상호 연계를 사실상 합의

「63 합의」 주요 내용

- 남측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 통을 북측에 제공하며, 그 중 6월 20일까지 10만톤을 전달함.
- 남과 북은 6월 21부터 쌍방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하며, 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 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함.

⑱ 6·4 합의 (서해상 군사출동 방지 및 상호 선전 활동 중지)

- '04년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3~4, 속초)에서 합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과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약칭
 - 초보적인 수준이나, 남북 간 최초의 신뢰구축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

「64 합의」 주요 내용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동 노력
-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04.6.15)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단계별 제거 및 완료 시 언론 공개 △향후 선전 수단 재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

- 한편, '15년 우리측은 北 목함지뢰 도발행위(8.4)에 대한 대응조치로 군사분계선 2개소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8.10, 17시)

*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수색 작전 수행 중 지뢰 폭발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 북한군이 MDL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

- 그러나, 「남북고위당국자접촉」(8.25,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북방송 재중단

⑱ 12·1 조치 (남북 간 출입·체류 제한)

- '08년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남북 간 통행 제한 △북한 체류인원 축소 등이 주요 내용(12.1, 군사전통문)

- 북한은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7.11) △김정일 건강이상설(8월) △민간단체 대북 전단살포 등에 대응하여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 간 열차 운행 중단 △ 남북 육로 통행 시간·인원 제한 △남북교류 협력협의사무소 폐쇄 등

- 북한은 '09.8월 남측 군사실무책임자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12.1조치」의 해제를 통보(8.20)

- 그러나, 화물수요의 감소와 우리 관광객의 신변 안전 문제 미해결 등에 따라 화물열차의 운행과 개성관광은 미재개

※ 김대중 대통령 조문 특사(김양건 등) 방문 등 북한이 남북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12·1조치」도 해제된 것으로 분석

⑳ 4·8 조치 (北 개성공단 가동 중단)

- '13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4.8)
 - 北 김양건(대남 담당 당비서 및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 방문 후 담화 형식으로 △北 근로자 전원 철수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발표
 - * 이와 관련, 북한은 개성공단의 입경 차단(남⇒북) 및 출경(북⇒남) 허용 통보(4.3)
 - 우리측은 통일부 장관 성명(4.11) 등을 통해 「4.3 조치」의 철회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북측의 거부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 '13.8월 「4·3조치」는 남북당국의 대화를 통해 4개월여만에 해결
 - 남북 당국은 7차례('13.7.6~8.14)의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 개성공단을 재가동(9.16)
 - 또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 개소(9.30) △'13.9월~'15.7월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회의 6회 개최('15.12월 기준)

㉑ 8·25 합의 (DMZ 지뢰폭발 문제)

- '15년 北 지뢰도발(8.4)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해소한 남북 간 합의(8.25)
 - (상황) 8.4., 北 지뢰도발 ⇒ 8.10., 南 대북확성기 방송 부분(2개) 재개 ⇒ 8.20., △北 포격 및 南 대응 포격 △北 총참모부, 48시간 최후통첩 △北 당 중앙군사위 준전시상태 선포 △北 김양건 사태 수습 접촉 제의
 - (회담) 8.22~24(판문점), 남북고위당국자 접촉(南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北 황병서 인민국 총정치국장·김양건 당중앙위 비서) 개최
 - (합의) △남북 당국회담 개최 △北 지뢰도발 사과와 재발방지 △南 확성기 중단 △北 준전시 상태 해제 △이산가족 상봉 합의(공동보도문)

㉒ 적십자회담 의제 5개항

- '70년대 적십자회담의 기본 의제로 이후 이산가족 사업의 지침
 - 본회담 의제 5개항은 20차례('71.9.20~'72.6.16)의 예비회담을 통해 확정

적십자 회담 의제 5개항

-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 내며 알리는 문제
-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우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우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 그러나, 7차례(72.8.29~7.13)의 적십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부진
 - 우리측은 순수하게 인도적인 문제에 집중한데 비해, 북측은 '최고의 인도주의는 통일', '남한의 법률과 사회환경 우선 개선' 등 기본 의제와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을 집중적으로 거론
 - * 당시 북한이 주장한 '남한의 법률과 사회환경의 개선'은 △국가보안법 등 반공법 폐지 및 반공활동 금지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자유왕래 등
 - 양측이 상이한 입장과 의견 차이로 대립하는 가운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73.8.28)하면서 적십자회담도 중단

㉓ 특수이산가족

- 「이산가족」은 남북지역에 분리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지칭
 - *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함”(이산가족법 제2조1항)
- 「이산가족」 중 국군포로·납북자 등을 「특수이산가족」이라고 지칭
 - '90년대까지 특수이산가족은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제외되었으나, 우리측이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00.6.30)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등을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한 이후

- 남북은 「제4차 적십자회담」(‘02.9.8)에서 6·25 전쟁 시 국군포로 및 남북자의 생사확인, 「제7차 적십자회담」(‘06.2.3)에서는 전후 남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합의

㉔ 변칙대좌 (變則對坐)

- 남북 간 성격이 다른 대화 주체가 상이한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
 - ‘79.1월 우리측은 북측에 무조건적인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남북접촉이 3차례(‘79.2.17, 3.7, 3.14, 판문점) 진행
 - 우리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를 위해 남북조절위 위원이, 북측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결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연락 대표가 참석
 - 그러나, 남북 간 의제와 대표자격이 불일치했던 만큼 당시 접촉은 서로의 입장 설명과 주장을 통고하는 수준

㉕ 민족공조

- 북측 표현으로 “우리민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해 외세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의미
 - 체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전략 차원의 논리 및 구호

- 핵문제 등 긴장된 정세에서 한·미 갈등을 유발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완화하고, 대북정책과 관련된 남한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면서 대북 지원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이용
 - * 북한은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김일성, 조국통일 10대강령, 1993.4.6)는 등 북핵위기 상황 등에서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
- 또한, 북측은 민족공조를 ‘조선민족 제일주의’ 등과 결부시켜 북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남한의 지원이 민족전래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내부적 선전논리로도 활용

4

회담 환담 시 참고

4. 회담 환담 시 참고

① 환담 (歡談)

- 환담은 날씨·속담·정세 등 소재의 제한 없이 가볍게 나누는 대화
- 환담을 통해 쌍방은 △회담에 임하는 자세 △각자 주장의 정당성 등을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전달
 - 환담은 의례적으로 나누는 인사와 덕담을 넘어 본격적인 의제 토론에 앞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제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 대화공세
- 통상적으로 환담은 언론의 취재편의 등을 위해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공개리에 진행
 - 따라서, 언론 등은 환담 시 양측이 발언한 내용을 유추·해석하여 회담의 분위기와 진행상황 등을 예측하고, 성과를 전망

② 환담의 주제별 내용

① 인사말 (안부)

- 보통 양측은 첫 번째 접촉 시 인사말로 말문을 열고 환담 시작

키워드

- 인사, 안부, 환대, 악수, 예절, 첫인상, 상견례 등

남북회담 용어집

② 날씨 (24 절기)

- 대부분의 남북회담에서는 상견례 후 날씨(24절기 등)를 소재로 본격적인 회담을 진행
 - 통상 날씨에 빗대어 남북관계나 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기대를 전달

키워드

- 맑음, 흐림, 태양, 구름, 비, 눈, 더위, 추위, 24 절기
- * △맑음 : 맑은 날씨처럼 오늘 회담이 잘 될 것 △ 흐림 : 남북관계 흐림 △ 비 : 농사가 잘되게 △눈 : 회담이 잘되도록 하늘이 축복 △ 더위 : 회담 열기 △추위 : 남북관계에 훈풍을
- * 24절기 △입춘(立春) : 남북관계(회담) 해동·시작 △ 입하(立夏) : 남북관계 (회담) 성장 △입추(立秋) : 남북관계 (회담) 결실 △입동(立冬) : 한해 남북관계(회담)의 좋은 마무리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춘(立春)	2월 4일경	입하(立夏)	5월 5·6일경	입추(立秋)	8월 6·9일경	입동(立冬)	11월 7·8일경
우수(雨水)	2월 19일경	소만(小滿)	5월 21일경	처서(處暑)	8월 23일경	소설(小雪)	11월 23·24일경
경칩(驚蟄)	3월 6일경	망종(芒種)	6월 6·7일경	백로(白露)	9월 9일경	대설(大雪)	12월 7·8일경
춘분(春分)	3월 21일경	하지(夏至)	6월 21일경	추분(秋分)	9월 23일경	동지(冬至)	12월 22일경
청명(淸明)	4월 5·6일경	소서(小暑)	7월 7·8일경	한로(寒露)	10월 8일경	소한(小寒)	1월 5일경
곡우(穀雨)	4월 20일경	대서(大暑)	7월 23일경	상강(霜降)	10월 23일경	대한(大寒)	1월 20일경

③ 명절

- 설·추석 등 민속명절을 소재로 회담을 진행할 경우는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상부상조 정신을 소재로 대화
 - * 북측은 상부상조를 이를 '우리민족끼리', '대북지원' 등과 연결하기도 함.

키워드

- 민속 명절, 전통 문화, 설,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
- * △설 : 시작 △정월대보름: 우리의 소원 △ 단오 : 우수한 민족 전통 문화

④ 농사

- 회담을 농사에 비유하여 회담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잘 가꾸자는 의미로 환담을 진행

키워드

- 모내기, 농번기, 자연재해, 수확(량), 풍년, 추수, 추수동장(秋收冬藏) 등
- * 자연재로 인한 수확 저조 : 식량 지원 암시

⑤ 지역 (회담 장소)

- 특정 지역(회담장소)이 갖는 정치·경제적 역할이나 역사적 의미 등을 소재로 환담 진행

키워드

- 판문점, 서울, 평양, 금강산, 설악산, 제주도(평화의 섬), 대동강, 파주, 개성공단, 금수강산 등
- * △판문점 : 분단 △금강산·개성 : 김정일 아량 △제주도 : 평화, 향몽유적지(대외 항쟁)

⑥ 체육

- 체육분야에서 남북의 선전이나 국제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등은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고취, 교류협력의 전형으로 좋은 환담 소재

키워드

-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2002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 게임, 북한 미녀응원단, 평창 동계올림픽 등

⑦ 식사 (음식)

-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환영 만찬 등을 소재로 상대방(초청측)의 노고를 치하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전체회의를 진행

키워드

- 식사, 잔치, 동지 팔죽(새알죽), 된장, 김치, 김장, 보쌈, 은대구, 다금바리, 허벅주, 백세주 등

⑧ 역사 (평화, 전쟁)

- 핵문제 등으로 대내외 정세가 엄중하여 남북 간 협력에 난관이 조성된 경우 한반도의 역사나, 국제 정세 등을 언급하며 국제무대에서 남북협력과 공조를 강조

키워드

- 을사밀약, 경술국치, 알타회담, 광복, 남북분단, 3.8선, 산업화, 민주화, 대외항쟁, 항몽유적, 민족공조, 강성대국 등

⑨ 남북관계

-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정세가 엄중한 경우 지난 남북 간 합의나 국제정세 등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키워드

- 8·25합의, 6.15·10.4 선언, 평화통일, 남북대화, 교류협력, 우리민족끼리, 자유왕래, 핵문제, 도룡기(屠龍技), 비목동행(比目同行) 등

⑩ 명언 [사자성어, 고사성어 등]

-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사성어, 사자성어, 속담, 명언 등을 활용하여 회답에 임하는 자세 등을 전달

키워드 * 주로 회답에서 사용된 사자성어 등

- 일면여구(一面如舊): 한번 만나도 오래된 친구와 같음.
* 제1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 전금진이, 제5차 장관급 회담에서는 홍순영 수석대표가 사용
- 도룡기(屠龍技): 용을 잡는 기술 즉 의미 없는 일을 의미
* 제12차 장관급 회담에서 정세현 수석대표가 北 핵개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사용한 말
- 고장난명(孤掌難鳴):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말로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 제2차 장관급 회담에서 北 전금진 수석대표가 언급
- 허심탄회(虛心坦懷): 마음에 거리낌 없이 솔직한 태도로 일에 임함.
* 남북 구분 없이 회담에서 자주 사용
-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탐구함.

- * 제1차 총리회담에서 한덕수 총리가 합의의 실천을 강조하며 실사구시 언급
- *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종석 수석대표가 北 실리주의에 빛대 언급
- 역지사지(易地思之):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함.
 - * 제18차 장관급회담 만찬 시 北 권호웅 수석대표 언급
- 사석위호(射石爲虎):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해 쏘아 맞춤.
 - *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재정 수석대표가 정성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
- 마저작침(磨杵作針)·마부작침(磨斧作針):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한다는 뜻
 - * 제25차 군사실무회담 문성묵 대표 '마저작침' 언급
- 노당익장(老當益壯): 늙을수록 혈기왕성하게 일하라는 말로 김정일이 평소 자주 인용하였고 함.
 - * 제4차 장관급회담, 北 전금진 수석대표가 박재규 장관의 건강을 염려하며 언급
- 굴지득금(掘地得金): 땅을 파다 금을 얻는다는 말로 뜻밖에 얻은 재물
 - * 제13차 장관급회담, 北 김령성 수석대표가 합의사항을 잘 실천하자는 취지로 언급
- 비목동행(比目同行): 한쪽눈만 있는 비목어는 짝을 이루어 다님.
 - * 제14차 장관급회담 정세현 수석대표 남북관계의 균형을 강조하며 언급
- 답설야중(踏雪夜中): 들판의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걸지말라는 내용의 서산대사의 시(김구 애송시)
 - * 제20차 장관급회담 이재정 수석대표가 '평화의 이정표를 세워야한다'는 취지로 언급
 - * 제1차 남북당국회담 황부기 수석대표가 '당국간 첫 회담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언급
- 군자대로 대로무문(君子大路 大路無門): 군자는 정도(큰 도리)를 가야하고 정도(큰 도리)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의미
 - * 제12차 장관급회담에서 北 김성령 수석대표는 "큰 뜻을 가진 사람이면 문이 없는 데서도 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해석하며, 대내외 정세와 무관하게 우리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 : 하늘의 때는 땅의 이득만 같지 않고, 땅의 이득은 사람들의 인화만 못함.
 - * 제12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세현 수석대표가 남북의 협조를 인화에, 대내외 정세를 천시와 지리에 비유하며, 대외정세와 남북관계의 조화를 강조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
 - * 제8차 경추위 회의에서 김광림 수석대표 언급
- 유지경성(有志竟成) :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룸(후한서)
- 동작서수(東作西收) : 봄철에 농사를 지어 가을에 거두어 들인다는 말로 올 한해 좋은 성과를 내자는 의미
- 우순풍조(雨順風調) : 비가 때맞춰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분다는 말로 추진하는 일에 맞게 외부여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
- 진도약퇴(進道若退) :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것 같다는 말로 때로는 굽히고 물러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노자)
- 선건자불발(善建者不拔) :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는다는 말로 기초가 튼튼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노자)
- 백리자 숙춘량, 적천리자 삼월취량(適百里者, 宿春糧, 適千里者, 三月聚糧) :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밤새 식량을 쥘어야 하고, 천리를 가려는 사람은 석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는 말로 여정이 길수록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
-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 : 물은 구멍을 가득 채운 뒤에 나간다는 말로 모든 일은 순서대로 따라 가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는 의미(맹자)
- 풍지적야불후 부대익야무력(風之積也不厚 負大翼也無力) : 바람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큰 날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로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는 뜻(장자)
- 지성무식(至誠無息) 불식즉구(不息則久) 구즉징(久則徵) : 지극한 정성은 쉬없고, 쉬없으면 오래되며 오래되면 징험이 있다는 말로 정성으로 꾸준히 행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뜻(중용)

5

회담 시 주요 사용 용어 (남북 비교)

5. 회담 시 주요 사용 용어 (남북 비교)

구분	남 측	북 측
1	상시출입증	고정출입증
2	정관	규약
3	빠짐없이 충분히 다 갖추어져 있다	그쫌하다
4	일이 순조롭게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빠듯하게 되는 것	긴장
5	새로 조직하거나 꾸려놓다, 구성하다	내오다
6	긴장되는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려 가라앉게 하다	눅잡히다
7	보증	담보
8	조금도 드티거나 어긋나거나 틀리는 일이 없다	드팀없다
9	되는대로 마구하는 동작이나 행동	망탕짓
10	문건	문본
11	협조	방조
12	지원인원	보장성원
13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14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으로 부정적인 일을 꾸미거나 남을 속이는 수법	오그랑수
15	곧	인차
16	힘차게 일어나다	일떠서다
17	괜찮다, 문제없다	일없다
18	북한 법문건 ex) 상임위 정령	정령
19	사실	정형
20	귀빈석	주석단
21	쳐서 몰골 없이 만들다	죽탕(을) 치다
22	쥐어서 마구치다	췌치다

5. 회담 시 주요 사용 용어 (남북 비교)

구분	남 측	북 측
23	단단히 집도리를 하거나 미리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달라붙다	짜고들다
24	정의	총칙
25	평가	총화
26	상호	호상
27	발효	효력발생
28	부정적인 결과	후과
29	기조발언	기본발언
30	서명(署名)	수표(手票)
31	수행원	수원
32	업신여기다	숙보다(업신여기다)
33	장점(長點)	우점(장점)
34	공금횡령	탐오랑비
35	지하철	지철
36	전조등, 후미등	앞등, 뒤등
37	(학교 등을) 빼먹다	뚜꺼먹다
38	세계 때리다	답새기다
39	의식주	식의주
40	맞벌이부부	직장세대
41	민간인	사회사람
42	냉장고	랭동기
43	노크	손기척(노크)
44	낭보	희보
45	(아이들을) 예뻐하다	(아이들을) 고와하다
46	눈에 보기 좋다	눈맛이 좋다
47	(의지, 태도가) 깨끗하고 굳세다	견결하다
48	임기응변	경우맞춤

구분	남 측	북 측
49	어땃 시빗거리를 잡아 대들다	걸고들다
50	떠들어대다, 고함치다	고아대다
51	왕래	래왕
52	고정자산	고정폰드
53	시찰단, 참관단	고찰단
54	검소하고 소박하다	검박하다
55	좌천되다	내리먹다
56	일을 세계 추진하거나 해나가는 능력	내밀성
57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생산요소	내부예비
58	힘차게 기세를 떨치다	나래치다
59	못마땅하고 섭섭하게 생각되 언짢다	나무랍다
60	낮선 손님	난테손님
61	무질서하고 난잡스럽게 행동하다	난탕(을) 치다
62	되거리무역	중개무역 (仲介貿易)
63	몹시 호되게 들이대는 타격	뒀타격
64	철로, 레일	레루
65	건성으로	걸씨
66	복더위가 한창인 무렵	복지경
67	속이 상하거나 증오심과 같은 격한 마음이 끓어오르는 모양	부겨부겨
68	억지를 마구쓰며 자꾸 우기는 모양	부등부등
69	양적으로 굉장히	수태
70	상이군인	영예군인
71	틀림없다, 확실하다	여불없다
72	눈여겨 살펴보다	여살피다
73	고집스럽게 내우세는 주장·견해	주견머리
74	주글살	주름살

5. 회담 시 주요 사용 용어 (남북 비교)

구분	남 측	북 측
75	차굴	터널
76	(일정한 차례나 기준에 따라) 몫으로 배당되다	차례지다
77	터무니 없다	탁없다
78	함상기(艦上機)	탑재기
79	태업, 일을 게을리 하는 것	태공
80	판가름	판가리
81	결판이 나다, 판가름이 나다	판(이) 나다
82	사병, 하사관과 병사를 통칭하는 말	하전사
83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본새	한본새
84	어떤 일의 본질과 내용을 똑바로 알고 있거나, 자신·믿음을 가지고 있다.	파악(이) 있다
85	가쁜 숨을 돌려세우다	태우다
86	새롭게 내놓거나 밝혀내는 것	창발(創發)
87	주차장	차마당
88	목돈, 뭉치돈	주먹돈
89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	주견머리
90	똑똑하고 매우 쟁쟁하다	여돌차다
91	경작지	부침땅
92	하찮은 일	부스럭일
93	특별히 힘을 기울이다	모를 박다
94	얼굴의 생김새나 차린 모습	모색
95	나선 계단	라선층층대
96	매우 어려운 고비	된고비
97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다	낮추불다
98	기어오르다	게바라오르다
99	밤을 꼬박 새우다	곤두새우다
100	현안문제	걸린문제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solid border, containing multipl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99
2022
10

A large vertical rectangular box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a solid black border at the top and bottom, and a dashed horizontal line running across the middle, creating a space for text above and below. The interior of the box is otherwise blank.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solid border, containing multipl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large rectangular area occupying most of the page, enclosed by a solid black border. Inside this area, there are 20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creating a templat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lines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leaving a small margin at the top and bottom.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solid border, containing multiple horizontal dashed lines, resembling a writing template or a form for text entry.

A large rectangular area occupying most of the page, bounded by a solid black line. Inside this area, there are 18 horizontal dashed lines, evenly spaced, creating a template for writing or drawing.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solid black border, containing multipl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남북회담 용어집

발행처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회담2과),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인쇄처 : 웃고문화사

발행일 : 2015년 12월
